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7. 03. 05

발의자 : 이성희 위원외

1. 제안경위

2007.2.28. 제1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성희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윤리특별위원회 개최통지와 심문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
- 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징계사유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5. 제정규칙(안) : 별첨

6.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7.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위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위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위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5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윤리심사·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성명		생년월일	
의원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요구 사유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구분	1.심사요구 의원() 2.심사대상의원 본인()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발언(변명) 주요 요지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